



의안번호	제98호
------	------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22. 8. 19.

#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98호
----------	------

제출연월일 : 2022. 8. 19.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 1. 제안이유

- 가. 시정목표 및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시민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현장중심 행정 등 시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조직 재설계가 필요하며,
- 나. 과도하게 증가된 조직을 효율화하고, 조직 운영과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논산시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이 조례를 개정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정 핵심목표 중심] 국·소의 기능 및 명칭 조정
  - 친절행정국 → 행정복지국(행정지원 강화, 계층별 맞춤형 복지 제공 등)
  - 동고동락국 → 경제문화국(경제 및 농업 활성화, 문화체육 육성 등)
  - 행복도시국 → 건설도시국(지역개발, 공원관리, 신속허가처리 등)
- 나. [행정조직 효율화] 기능최퇴 및 과소조직 정비, 유사 기능 통합 등
  - 재배치 목표관리를 통한 각종 신규 행정수요(인구, 청년 등) 대응
- 다. [행정기구 동결 및 정원 증가 최소화] 의회사무국 2명 증원

현행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청 : 3국 4실 31과 143팀</li> <li>• 의회 : 1국 3전문 2팀</li> <li>• 직속기관 : 2직속기관 7과 25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소 : 4과 14팀</li> <li>- 농업기술센터 : 3과 11팀</li> </ul> </li> <li>• 사업소 : 2사업소 4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시설사업소 : 3팀</li> <li>- 서울사무소 : 1팀</li> </ul> </li> <li>• 하부행정기관 : 2읍 11면 2동 58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청 : 3국 4실 <b>32과 142팀 (+1과 -1팀)</b></li> <li>• 의회 : 1국 3전문 <b>3팀 (+1팀)</b></li> <li>• 직속기관 : 2직속기관 7과 25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소 : 4과 14팀</li> <li>- 농업기술센터 : 3과 11팀</li> </ul> </li> <li>• 사업소 : <b>1사업소 4팀 (-1사업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학습도서관 : 4팀</li> </ul> </li> <li>• 하부행정기관 : 2읍 11면 2동 58팀</li> </ul>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개정조례안 공포 후 추경에 반영 예정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7. 21. ~ 8. 10. (20일 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제출(붙임 참조)

5) 비용추계서 : 붙임

6) 충청남도소관실과 : 충청남도 자치행정과(☎041-635-3598)

##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친절행정국, 동고동락국, 행복도시국”을 “행정복지국, 경제문화국, 건설도시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친절행정국)”을“(행정복지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친절행정국에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를 “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인구청년교육과, 복지정책과, 100세행복과, 아동복지돌봄과, 주민생활지원과”로, “디지털뉴딜과, 관광과, 미래사업과, 국방협력과”를 “디지털정보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절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구역”을 “행정구역, 자치분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마을자치, 새마을,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8. 인구, 청년, 교육, 청소년에 관한 사항
9. 복지보훈, 여성, 장애인, 다문화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제16호(종전의 제9호) 중 “전산정보”를 “정보정책, 전산정보”로, “정보통신”을 “정보통신, 빅데이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관광진흥, 백제군사박물관 운영 관리”를 “어르신복지, 행복대학,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을 “장사 및 묘지”으로 한다.

11. 복지자원관리, 통합조사관리, 희망복지지원, 의료자활에 관한 사항

12. 보육, 아동, 드림스타트, 학대신고대응센터에 관한 사항

제4조의2의 제목 “(동고동락국)”를 “(경제문화국)”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제문화국에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국방도시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농촌활력과, 축수산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농산물유통지원센터를 둔다.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고동락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복지행정, 서비스연계, 통합조사관리, 의료자활”을 “국방도시조성, 국방산단, 국방협력, 국방문화”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장사 및 묘지”를 “체육정책, 체육시설조성, 체육시설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체육 및 체육시설 관리”를 “유통정책, 로컬푸드, 학교급식지원, 바이오식품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학교급식지원”을 “기후변화정책, 탄소중립, 미세먼지, 악취방지, 대기관리, 환경지도, 수질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지역경제, 전통시장,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그린에너지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조성 및 투자유치, 일자리, 중소기업 육성지원,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7. 관광기획, 관광진흥, 백제군사박물관 운영 관리, 근대문화에 관한 사항

8. 농업정책, 농촌인력지원, 친환경농업, 원예특작, 마을사업에 관한 사항

12. 생활폐기물, 환경시설운영, 농업폐기물에 관한 사항

제5조의 제목 “(행복도시국)”을 “(건설도시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산림공원과, 지역개발과, 도시주택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신속허가과, 토지정보과, 상하수도과를 둔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복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정책, 농업기반시설, 지역개발, 하천관리”를 “지역개발, 원도심정비, 경관디자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건축인허가”를 “건축행정 및 건축안전, 건축인허가”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0호, 제11호

및 제9호로 한다.

2. 건설정책, 농업기반시설, 하천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 공동주택, 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생정책, 도시재생사업, 생활SOC, 공공건축에 관한 사항

제7조 중 “전략사업실, 참여예산실, 청렴감사실, 열린홍보실을 두며, 전략사업실은 시정기획·뉴딜정책·정책관리·빅데이터·도시경관디자인 사무를, 참여예산실은 예산·재정지원·의회법무·규제개혁통계 사무를, 청렴감사실은 감사·조사·계약심사·특사경전담 사무를, 열린홍보실은 언론홍보·방송홍보·뉴미디어홍보”를 “기획감사실, 예산실, 미래전략실, 홍보협력실을 두며, 기획감사실은 혁신기획·감사·조사·성과관리 사무를, 예산실은 예산·재정관리·의회법무·규제개혁통계 사무를, 미래전략실은 정책개발·균형발전·탐정호개발·탐정호운영 사무를, 홍보협력실은 홍보기획·언론홍보·뉴미디어홍보·서울사무소”로 한다.

제1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공공시설사업소”를 각각 “평생학습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시민운동장 관리”를 “열린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나.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다. 도서관정책에 관한 사항

마. 강경연무도서관에 관한 사항

제20조 중 “1,121명”을 “1,12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0명”을 “22명”으로 한다.

별표3, 별표5, 별표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행정자치위원회

가. 기획감사실, 예산실, 미래전략실, 홍보협력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자치행정과, 인구청년교육과, 복지정책과, 100세행복과, 아동복지돌봄과,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디지털정보과, 민원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보건소, 평생학습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3. 산업건설위원회

가. 안전총괄과,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국방도시과, 농촌활력과, 축수산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농산물유통지원센터, 건설과, 산림공원과, 지역개발과, 도시주택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신속허가과, 토지정보과, 상하수도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②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전략사업실, 참여예산실, 청렴감사실, 열린홍보실, 친절행정국, 동고동락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기획감사실, 예산실, 미래전략실, 홍보협력실, 행정복지국, 경제문화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행복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산업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도서관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1호제2항제1호 중 “친절행정국장, 행복도시국장, 참여예산실장”을 “행정복지국장, 경제문화국장, 예산실장”으로 한다.

③ 논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친절행정국장, 동고동락국장, 행복도시국장”을 “행정복지국장, 경제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④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가목 중 “친절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나목 중 “동고동락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다목 중 “행복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라목 중 “참여예산실장”을 “예산실장”으로 한다.

⑤ 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행복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친절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도시정책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

⑥ 논산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친절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친절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논산시 국방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친절행정국장, 행복도시국장”을 “행정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⑧ 논산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친절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친절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도시친화재생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⑨ 논산시 사이버 논산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친절행정국장, 동고동락국장, 행복도시국장, 전략사업실장, 참여예산실장, 열린홍보실장”을 “행정복지국장, 경제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예산실장, 홍보협력실장”으로 한다.

⑩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친절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⑪ 논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친절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논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친절행정국장, 탄소중립과장”을 “행정복지국장, 환경과장”으로 한다.

⑬ 논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친절행정국장, 동고동락국장, 행복도시국장”을 “행정복지국장, 경제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⑭ 논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친절행정국장, 동고동락국장, 행복도시국장”을 “행정복지국장, 경제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⑮ 논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친절행정국장, 동고동락국장, 행복도시국장”을 “행정복지국장, 경제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⑯ 논산시 지방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친절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동고동락국장, 행복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략사업실장”을 “경제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⑰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친절행정국장, 행복도시국장, 참여예산실장”을 “행정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예산실장”으로 한다.

⑱ 논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친절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참여예산실장”을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실장”으로 한다.

①⑨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친절행정국장, 행복도시국장, 참여예산실장”을 “행정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예산실장”으로 한다.

②⑩ 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친절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친절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②⑪ 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열린홍보실장”을 “홍보협력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1호나목 중 “친절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②⑫ 논산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친절행정국장으로 하고 동고동락국장, 행복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략사업실장, 청렴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경제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②⑬ 논산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친절행정국장, 동고동락국장, 행복도시국장, 참여예산실장”을 “행정복지국장, 경제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 예산실장”으로

한다.

②④ 논산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친절행정국장, 동고동락국장, 행복도시국장”을 “행정복지국장, 경제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②⑤ 논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동고동락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②⑥ 논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동고동락국장, 참여예산실장, 복지인권과장”을 “경제문화국장, 예산실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②⑦ 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동고동락국장, 문화체육과장”을 “경제문화국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②⑧ 논산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행복도시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②⑨ 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행복도시국장, 희망마을건설과장”을 “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③⑩ 논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행복도시국장, 뉴딜경제과장”을 “경제문화국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③⑪ 논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행복도시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㉔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복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㉕ 논산시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행복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농업정책과장, 건설과장, 도시친화재생과장, 맑은물과장”을 “농촌활력과장, 건설과장, 도시재생과장, 상하수도과장”으로 한다.

㉖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및 별표4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략사업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

“열린홍보실”을 “홍보협력실”로 한다.

“마을자치분권과”를 “농촌활력과”로 한다.

“복지인권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

“평생교육과”를 “평생학습도서관”으로 한다.

“문화체육과”를 “체육진흥과”로 한다.

“환경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도시친화재생과”를 “도시재생과”로 한다.

㉗ 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략사업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

㉘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참여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㉙ 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참여예산실장, 청렴감사실장, 열린홍보실장”을 “기획감사실장, 예산실장, 홍보협력실장”으로 한다.

㉞ 논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참여예산실장”을 “예산실장”으로 한다.

㉟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참여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㊱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참여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㊲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중 “참여예산실장, 세무과장, 뉴딜경제과장”을 “예산실장, 세무과장,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㊳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청렴감사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㊴ 논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열린홍보실장”을 “홍보협력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열린홍보실장”을 “홍보협력실장”으로 한다.

㊵ 논산시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농업기술센터”를 “산림공원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농업기술센터”를 “산림공원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미래사업과”를 “산림공원과”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농업정책과”를 “농산물유통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제5호 중 “뉴딜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미래사업과”를 “산림공원과”로 한다.

제3조제7호 중 “미래사업과”를 “산림공원과”로 한다.

④⑤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미래발전사업단 국방협력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미래발전사업단 국방협력과”를 “경제문화국 국방도시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경제문화국 국방도시과”로 한다.

④⑥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복지인권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평생교육과장, 100세 행복과장, 도시친화재생과장”을 “복지정책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인구청년교육과장, 100세 행복과장,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복지인권과, 주민생활지원과 및 평생교육과·100세행복과·도시친화재생과”를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과 및 인구청년교육과·100세행복과·도시재생과”로 한다.

④⑦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복지인권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④⑧ 논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전략사업실장·복지인권과장·문화체육과장·뉴딜경제

과장·도시친화재생과장”을 “기획감사실장·복지정책과장·문화예술과장·투자유치과장·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④⑨ 논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술지원과”를 “기술정책과”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농업정책과장, 복지인권과장”을 “농촌활력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⑤⑩ 논산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뉴딜경제과장, 복지인권과장”을 “투자유치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⑥⑪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평생교육과장”을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⑦⑫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평생교육과장”을 “인구청년교육과장”으로 한다.

⑧⑬ 논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역량개발과장, 농업정책과장”을 “지도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으로 한다.

⑨⑭ 논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가목 중 “기술지원과장”을 “지도정책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3호가목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촌활력과장”으로 한다.

㉔ 논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뉴딜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수산과장, 맑은물과장, 건강도시지원과장”을 “지역경제과장, 농촌활력과장, 축수산과장, 상하수도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㉕ 논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촌활력과장”으로 한다.

㉖ 논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농업정책과장, 축수산과장, 산림공원과장, 역량개발과장”을 “농촌활력과장, 축수산과장, 산림공원과장, 융복합지원과장”으로 한다.

㉗ 논산시 수돗물 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6호 중 “맑은물과장”을 “상하수도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맑은물과”를 “상하수도과”로 한다.

㉘ 논산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역량개발과장”을 “지도정책과장”으로 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자치행정과장	조진원
안	인사팀장	서재원
자	담당자	김도현 (746-5233)

【별표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4조제2항 관련)

사업소명	위치
평생학습도서관	논산시 관촉로 113-23

【별표 5】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21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율	1퍼센트 이내	7퍼센트 이내	28퍼센트 이내	33퍼센트 이내	24퍼센트 이내	6퍼센트 이상	1퍼센트 이내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퍼센트 이내	97퍼센트 이상	12퍼센트 이내	88퍼센트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9급상당
비율	0퍼센트	50퍼센트이내	20퍼센트이내	30퍼센트이내

【별표6】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구 분	총 계	집행기관					의회 사무기구	
		소 계	본 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소계	의회 사무국
총 계	1,123	1,101	1,101			22	22	
정무직 계	1	1	1					
시 장	1	1	1					
일반직 계	1,074	1,052	1,052			22	22	
3급	1	1	1					
4급	5	4	3	1		1	1	
5급	62	60	37	7	1	15	2	2
6급 이하	1,003	984	984			19	19	
전문경력관	3	3	3					
별정직 계	4	4	4					
6급상당 이하	4	4	4					
연구직 계	4	4	4					
연구관								
연구사	4	4	4					
지도직 계	40	40	40					
지도관	4	4	4					
지도사	36	36	36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친절행정국, 동고동락국, 행복도시국</u>을 둔다.</p> <p>제4조(<u>친절행정국</u>) ① <u>친절행정국</u>에 <u>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세무과, 회계과, 디지털뉴딜과, 관광과, 미래사업과, 국방협력과, 민원과</u>를 둔다.</p> <p>② <u>친절행정국장</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2. (생략)</p> <p>3. 선거, 주민등록, 자치행정 및 <u>행정구역</u>에 관한 사항</p> <p>4.·5. (생략)</p> <p><u>&lt;신 설&gt;</u></p> <p>6. (생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3조(국의 설치) ----- ----- <u>행정복지국, 경제문화국, 건설도시국</u>----- -----</p> <p>제4조(<u>행정복지국</u>) ① <u>행정복지국</u>에 <u>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인구청년교육과, 복지정책과, 100세행복과, 아동복지돌봄과, 주민생활지원과</u>--- <u>디지털정보과</u>----- -----.</p> <p>② <u>행정복지국장</u>----- -----.</p> <p>1.·2. (현행과 같음)</p> <p>3. ----- <u>행정구역, 자치분권</u>----- --</p> <p>4.·5. (현행과 같음)</p> <p>6. <u>마을자치, 새마을, 주민자치</u> <u>에 관한 사항</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8. <u>인구, 청년, 교육, 청소년에</u> <u>관한 사항</u></p> <p>9. <u>복지보훈, 여성, 장애인, 다문화</u> <u>화에 관한 사항</u></p>

7. ~ 9. (생략)

9. 전산정보,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10. 관광진흥, 백제군사박물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1. 미래발전 사업 발굴 및 추진 관련 사항

12. 탑정호 관광명소화, 역사문화 관광명소화 추진

13.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4.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15. 강경근대문화 관광명소화 사업 관련 사항

16. 국방협력, 국방산단, 국방시설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의2(동고동락국) ① 동고동락국에 마을자치분권과, 100세 행복과, 복지인권과, 주민생활지원과, 아동복지돌봄과,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환경과, 탄소중립과를 둔다.

14. ~ 16.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16. 정보정책, 전산정보--- 정보통신, 빅데이터-----  
--

10. 어르신복지, 행복대학, 종합사회복지관-----

11. 복지자원관리, 통합조사관리, 희망복지지원, 의료자활에 관한 사항

12. 보육, 아동, 드림스타트, 학대신고대응센터에 관한 사항

13. 장사 및 묘지-----  
-----

<삭 제>

<삭 제>

<삭 제>

제4조의2(경제문화국) ① 경제문화국에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국방도시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농촌활력과, 축수산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농산물유통지원센터를 둔다.

② 동고동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마을공동체, 자치분권, 마을자치, 새마을,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행복배움, 공동체 건강에 관한 사항
4. 복지행정, 서비스연계, 통합조사관리, 의료자활에 관한 사항
5. 여성·보육, 장애인·아동에 관한 사항
6. 장사 및 묘지에 관한 사항
7. 교육지원, 평생교육, 도서관 운영, 청소년에 관한 사항
8. (생략)  
<신설>
9. 체육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경제문화국장-----  
-----.

1. (현행과 같음)
  2. 지역경제, 전통시장,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그린에너지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조성 및 투자유치, 일자리, 중소기업 육성지원,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4. 국방도시조성, 국방산단, 국방협력, 국방문화-----  
--
- <삭제>
6. 체육정책, 체육시설조성, 체육시설운영-----
  7. 관광기획, 관광진흥, 백제군사박물관 운영 관리, 근대문화에 관한 사항
  5. (현행 제8호와 같음)
  8. 농업정책, 농촌인력지원, 친환경농업, 원예특작, 마을사업에 관한 사항
  9. 유통정책, 로컬푸드, 학교급식지원, 바이오식품지원-----  
-----

10. 농정혁신, 친환경농업, 농산, 양정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1.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2. (생 략)

13. 환경관리, 환경지도, 자원순환, 환경자원 및 수계관리에 관한 사항

14.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미세먼지, 에너지자원, 악취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행복도시국) ① 행복도시국에 뉴딜경제과, 산림공원과, 건설과, 하천지하수과, 도시정책과, 도시친화재생과, 안전도로과, 시민교통과, 원스톱허가과, 토지정보과, 맑은물과를 둔다.

② 행복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지역경제, 전통시장, 소상공인,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조성 및 투자유치,

<삭 제>

11. 기후변화정책, 탄소중립, 미세먼지, 악취방지, 대기관리, 환경지도, 수질관리---

12. 생활폐기물, 환경시설운영, 농업폐기물에 관한 사항

10. (현행 제12호와 같음)

<삭 제>

<삭 제>

제5조(건설도시국) 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산림공원과, 지역개발과, 도시주택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신속허가과, 토지정보과, 상하수도과를 둔다.

② 건설도시국장-----

1. (현행과 같음)

2. 건설정책, 농업기반시설, 하천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중소기업 육성지원, 공장등록  
에 관한 사항

4. 건설정책, 농업기반시설, 지  
역개발,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5. (생 략)

6. 도시계획 및 개발, 생활SOC  
추진, 공동주택, 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

7. (생 략)

8. 건축인허가, 개발민원, 농지  
· 산림민원에 관한 사항

9. · 10. (생 략)

11. (생 략)

제7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단  
위 행정기구의 설치) 시 행정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에 속  
하지 아니하는 전략사업실, 참  
여예산실, 청렴감사실, 열린홍  
보실을 두며, 전략사업실은 시  
정기획 · 뉴딜정책 · 정책관리 ·  
빅데이터 · 도시경관디자인 사  
무를, 참여예산실은 예산 · 재정  
지원 · 의회법무 · 규제개혁통계

4. 지역개발, 원도심정비, 경관  
디자인-----

5. 도시계획, 공동주택,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현행 제5호와 같음)

6. 도시재생정책, 도시재생사업,  
생활SOC, 공공건축에 관한  
사항

7. (현행과 같음)

8. 건축행정 및 건축안전, 건축  
인허가-----

10. · 11. (현행 제9호 및 제10호  
와 같음)

9. (현행 제11호와 같음)

제7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단  
위 행정기구의 설치) -----

----- 기획감사실, 예산  
실, 미래전략실, 홍보협력실을  
두며, 기획감사실은 혁신기획 ·  
감사 · 조사 · 성과관리 사무를,  
예산실은 예산 · 재정관리 · 의  
회법무 · 규제개혁통계 사무를,  
미래전략실은 정책개발 · 균형

사무를, 청렴감사실은 감사·조사·계약심사·특사경전담 사무를, 열린홍보실은 언론홍보·방송홍보·뉴미디어홍보 사무를 분장한다.

제16조(업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사업소

가. 공공시설사업소 행정의 종합조정 및 일반사무

나.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다. 공공시설타운 조성 및 운영·관리

라. 시민운동장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바. 여성·노인 관련 프로그램 추진

사. 민방위 대피시설 및 민방위 전용교육장 관리

2. 서울사무소

가.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자료수집

발전·탐정호개발·탐정호운영 사무를, 홍보협력실은 홍보기획·언론홍보·뉴미디어홍보·서울사무소 -----  
-----.

제16조(업무) -----  
-----  
--.

1. 평생학습도서관

가. 평생학습도서관 -----  
-----

나.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다. 도서관정책에 관한 사항

라. 열린도서관-----  
----

마. 강경연무도서관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나. 투자유치, 기업유치 및 정

부예산확보 활동

다. 경영수익 증대사업 발굴,

농·특산물 등 지역생산품

관로 개척

라.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한 각종 홍보활동 및 재경

향우단체 등 지원

제20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121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생략)
2.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 20명

제20조(정원의 총수) -----

-----1,12

3명-----

-----.

1. (현행과 같음)

2. ----- 22명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정원의 총수)

**2. 비용추계결과****가. 추계의 전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되는 공무원 인건비를 기준인건비 산정기준 단가로 산정하고 매년 보수인상률 3.0% 적용

**나. 추계결과 : 해당 없음**

- 5년 추가소요액 : 424,731천원 (단위 : 천원, 명)

구 분	1인기준 추가소요액	인원	금 액	연 도	합 계
합 계	40,000	2	80,000	5개년	424,731
8급 1호봉 연 지급액	40,000	2	80,000	5개년	424,731

**3.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조 진 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80,000	82,400	84,872	87,418	90,041	424,731	
시 비	80,000	82,400	84,872	87,418	90,041	424,731	
세 출	80,000	82,400	84,872	87,418	90,041	424,731	
인건비	80,000	82,400	84,872	87,418	90,041	424,731	
○ 보수	80,000	82,400	84,872	87,418	90,041	424,731	
<b>재원 조달</b>	80,000	82,400	84,872	87,418	90,041	424,731	
의존 재원	소 계	80,000	82,400	84,872	87,418	90,041	424,731
	보조금						
	지방교부세	80,000	82,400	84,872	87,418	90,041	424,731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내용

○ 제 출 자 : (사)논산시농어업회의소 회장 손병륜

○ 제출의견 : 5건

1. 농촌활력과 → 농업정책과 또는 미래농업과
  - 농촌활력은 주로 마을만들기 사업영역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도농 복합도시 논산시 위상에 맞는 농업정책과 혹은 시정목표인 미래를 준비하는 친환경농업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담고 미래 지향적 의미로 미래농업과 제안
2. 논산명품유통과 → 농식품유통과 또는 안전농산물유통과
  - 논산명품유통과 조직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음
3. 로컬푸드팀 → 푸드플랜팀 또는 먹거리순환팀
  - 우리지역의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으로 일자리창출, 먹거리 질 향상,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을 위한 폭넓은 먹거리 정책의 고민, 발굴과 집행이 필요
4. 학교급식지원팀 → 공공급식지원팀
  -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유치원, 기업체, 군납 등 다양한 공공의 영역을 아우르며 지역 먹거리 생산과 공급의 체계화가 요구
  - 소규모, 영세농, 고령농의 생산기반구축과 판로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공급을 위한 업무의 확대가 필요
5. 바이오식품지원 축수산과 담당
  - 원활한 강경바이오 식품산업 육성 공약이행을 위해 축수산과에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25조<sup>[시행 2022. 1. 13.]</sup>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